



제42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기후위기대응
예·결산제도로 변경하고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과 연계〉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910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참고사항	2
IV. 검토의견	3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기후위기대응 예·결산제도로 변경 하고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과 연계 (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2·제2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5항) ..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한정애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11. 27.

다. 회 부 일 : 2024. 11.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온실가스 감축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의 배출과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도 분석하도록 하는 기후위기대응 예산제도로 변경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과 연계하여 기후위기대응 예산제도를 시행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이에 결산보고서에 첨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명칭을 기후위기대응 예산제도에 맞춰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2·제2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5항).

Ⅲ.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11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기후위기대응 예·결산제도 도입

(안 제15조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기후위기대응 예·결산제도 도입 - 기후위기대응 결산서 제출(예산서 작성·제출 및 결산서 작성은 「국가재정법」에 신설) - 기후위기대응 기금결산서 제출(기금운용계획서 작성·제출 및 기금결산서 작성은 「국가재정법」에 신설)

개정안은 기후위기대응 예·결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5909호)¹⁾의 의결을 전제로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기후위기대응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추가하려는

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5909호)

현 행	개 정 안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 예산의 원칙으로 예산이 <u>온실가스 감축</u>에 미치는 효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 노력 규정 <신 설> <신 설> - 예산(기금)이 <u>온실가스 감축</u>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u>온실가스감축인지</u>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 작성·제출 - <u>온실가스감축인지</u> 결산서기금결산서 작성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기후위기대응 예·결산제도로 변경 등 - 예산의 원칙으로 예산이 <u>온실가스 감축과 배출 및 기후변화</u>에 미치는 효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 노력 규정 - <u>기후위기대응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 사업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 연계하여 수립</u> - <u>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추어 기후위기대응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 사업의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설정하는 장기 계획 수립·이행</u> - 예산(기금)이 <u>온실가스 감축과 배출 및 기후변화</u>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u>기후위기대응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 작성·제출</u> - <u>기후위기대응 결산서(기금결산서) 작성</u>

것임.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 및 기후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예산의 원칙에 명시하는 한편, 현행법에 따라 작성하고 있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서·기금결산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라 함)의 명칭을 기후위기대응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서·기금결산서(이하 “기후위기대응 예·결산서”라 함)로 변경하고, 기후위기대응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 사업 선정 시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과 연계하여 수립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추어 사업의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설정하도록 하는 등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에 미칠 효과도 분석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대응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현행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는 ‘배출사업’은 제외하고 ‘감축사업’만 포함하고 있어 국가재정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를 평가하기 어려우며,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그 효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선정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시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과 연계하여 수립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추어 사업의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

으로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개별 부처별·사업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감축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입법 타당성이 인정되나,

2021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시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탄소감축인지, 기후변화인지 등 다양한 명칭이 거론되었으나, 정량적 성과평가 가능성, 사업범위 명확화 등 제도 운영 측면을 감안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로 합의한 바 있으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는 2023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시부터 작성된 만큼, 제도 안착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거친 후 제도의 효과성 및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제1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 개정 예정인 바, 동 개정사항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 결과에 따라 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①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은 제외한다) 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야 한다. 1. ~ 7. (생략) 7의2. <u>온실가스감축인지</u> 결산서 8. ~ 12. (생략) ②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2. (생략) 2의2. <u>온실가스감축인지</u> 기금결산서 3. (생략) ③ · ④ (생략) ⑤ 제1항제7호에 따른 성인지 결산 서,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른 <u>온실 가스감축인지</u> 결산서,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 및 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른 <u>온실가스감축인지</u>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① ----- ----- ----- ----. 1. ~ 7. (현행과 같음) 7의2. <u>기후위기대응</u> ----- 8. ~ 12. (현행과 같음) ② ----- -----. 1·2. (현행과 같음) 2의2. <u>기후위기대응</u> ----- 3.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 ----- <u>기후위 기대응</u> ----- ----- ----- <u>기후위기대응</u> ----- ----- -----.

문의처

02)6788-5153

